심 사 보 고 서

【남양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】

의안번호 175

2023. 9. 11. 복지환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연월일 및 제출자 : 2023. 6. 2. / 박윤옥 의원 등 11명

나. 회부일자 : 2023. 6. 2.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23. 9. 11.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남양주시 예술인들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, 예술인들에 의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확산하여 전 시민의 문화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.

나. 주요내용

- 목적, 정의,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 함 (안 제1조~제4조)
- 지급대상 및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 (안 제5조~제9조)
-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, 시행규칙에 대해 규정 함 (안 제10조~제11조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조공선)

○ 본 조례안은 경기도 기회소득 사업 도입과 관련하여 관내 거주 예술인 들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급대상 및 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 있으며

- 안 제2조에서 '기회소득'이란 일정소득 수준 이하의 남양주시 예술인 에게 남양주시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재원을 분담하여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으로 정의하고 있고
- 「예술인 복지법」 제4조 "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"고 규정하고 있는바, 예술인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지원하려는 본 조례안은 그 목적 상 부합하다고 사료됨.
- 본 조례안이 시행된다면 예술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창작활동을 활성화 함으로써 예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예술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
- 또한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"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" 기부・보조,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를 통해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지출 근거를 마련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, 본 조례안의 제정 필요와 시기적 적절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
-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내 예술인에 대한 정확한 현황조사 및 실태조사, 사업홍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, 기회 소득 지원 사업은 경기도와 각 도내 시군이 공동으로 재원을 분담하는 것으로, 향후 사업추진 시 경기도 및 도내 시군구 간에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- 4. 질의 · 답변요지 :
 - O 회의록 참고
- 5. 토론요지 : 없 음
- 6. 심사결과 : 『대안반영폐기』
 - 「남양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(의안번호 : 175)」과 「남양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(의안번호 : 193)」은 남양주시 예술인들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문 통합・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함.
- 7. 소수의견 **요**지 : 없 음